

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

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를 각각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로 하고,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3(금리인하 요구) ① 조합과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개인이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: 취업, 승진,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개인이 아닌 자(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)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: 재무상태 개선,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은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.

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)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

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, 서면,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,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별표 2 제2호라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제45조의3제2항(제7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101조 제1항제1호의3	1,000
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의3 및 별표 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인가의 세부요건) ①법 제 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요건중 인력·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	제11조(인가의 세부요건) ①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물적시설	2. -----
가.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이	가.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
상인 사무실을 갖추는 것	을 충분히 확보할 것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18조의3(금리인하 요구) ① 조</u> <u>합과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</u> <u>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</u>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/u> <u>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</u> <u>요구할 수 있다.</u>
	1. <u>개인이 대출등의 계약을 체</u> <u>결한 경우: 취업, 승진, 재산</u> <u>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</u> <u>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</u> <u>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
	2. <u>개인이 아닌 자(개인사업자</u>

를 포함한다)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: 재무상태 개선,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은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.

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)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, 서면,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,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

<u>제18조의3</u> · <u>제18조의4</u> (생략)	<u>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.</u> <u>제18조의4</u> · <u>제18조의5</u> (현행 제18 조의3 및 제18조의4와 같음)
---	---